

GOVP1199810750

L
338.1026
L293L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令集

1998. 1

農 林 部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關한 法令

目 次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페이지
第1章 總 則			13
第1條 目 的	제1조 목 적	제1조 목 적	13
第2條 正 義	제2조 도매시장의 거래품목	제2조 정 의	14
	제3조 공익법인	제3조 중앙도매시장	15
	제3조의2 중도매인의 중개영업		16
第3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17
第4條 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20
第2章 農水產物의 生産 및 出荷調整			20
第5條 出荷調整			21
第6條 生産團地의 指定	제4조 지정·준지정품목의 구분		21
	제5조 생산단지의 지정요건		22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페이지
·第 7 條 生産團地 이외에서의 指定 品目 生産者の 指定			23
	제 6 조 생산단지 등의 지정절차		23
第 8 條 契約生産	제 7 조 생산단지 지정의 변경·해제 등		24
	제 8 조 재배계약 등의 알선·조정		25
第 9 條 出荷·損失補償	제 8 조의2 생산자 단체		26
第 10 條 備蓄事業等	제 9 조 출하손실의 보상		27
	제 10 조 비축사업 등의 위탁		29
第 10 條의 2 過剩生産時의 生産者 保護	제 11 조 비축사업 등의 실시 절차 등		30
第 10 條의 3 農産物의 輸入推薦 등	제 12 조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32
第 10 條의 4 輸入利益金の 徵收 등			33
第 11 條 備蓄事業 등의 損失처리	제 13 조 비축사업의 비용처리	제 3 조의 2 농산물의 수입추천 등	34
	제 14 조 비축사업 등 자금의 별도 계정 설치	제 3 조의 3 수입이익금의 징수 등	35
			36
			38

第3章 農水産物都賣市場			38
第12條 都賣市場의 開設·運營	제15조 도매시장의 부류구분		38
	제16조 도매시장의 명칭 등		39
第13條 開設區域		제4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39
第14條 開設許可	제17조 개설허가의 신청절차		40
第15條 許可基準		제5조 업무규정	41
第16條 開設者의 義務		제6조 운영관리계획서	45
第17條 都賣市場法人의 지정	제18조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47
第17條의2 公共出荷法人	제19조 (삭제)		48
第17條의3 都賣市場法人의 買取上場 義務		제7조 (삭제)	49
第18條 都賣市場法人의 營業場所		제8조 도매시장법인의 부대업무	50
第19條 事業年度			52
第20條 帳簿의 備置		제9조 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	54
第21條 都賣市場法人의 保證金 納付 등		제10조 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 납부 등	55
第22條 廢業의 許可 등		제11조 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	56
			57
			5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페이지
第23條 仲都賣業의 許可	제20조 (삭제)	제12조 중도매업 허가절차	58
第24條 賣買參加人의 登錄		제13조 매매참가인의 등록	60
第25條 仲都賣人 및 賣買參加人의 保證金納付 등		제14조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의 보증금 납부 등	61
第25條의2 仲都賣人의 業務範圍 등의 特例	제21조 (삭제)	제15조 최소경매사 수	62
第26條 競賣士의 任免		제16조 경매사의 자격시험	63
		제17조 시험합격자의 등록 및 자 격증 교부	64
第27條 競賣士의 任務 및 身分			65
		제18조 실비의 징수	65
第27條의2 蒐集商의 登錄		제18조의2 수집상의 등록	66
		제18조의3 수집상의 등록예외	66
第28條 受託販賣의 原則		제19조 수탁판매의 예외	68
		제19조의2 비상장 거래허가 대상 농수산물	69
第29條 賣買方法		제20조 매매방법의 예외	70
第30條 競賣 또는 入札方法		제20조의2 거래성립 최저가격의 제시의 요건	72
		제21조 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 의 우대	73
		제22조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74
		제23조 판매원표 관리	74

第30條의2 去來의 特例		제23조의2 도매시장법인의 거래에 관한 특례	75
第30條의3 出荷者에 대한 損失補塡			77
第31條 入荷數量 등의 揭示		제24조 입하수량 등의 게시 등	77
第32條 受託의 拒否禁止 등			78
第33條 賣買農水産物の 引受 등			78
第33條의2 荷役業務			79
第34條 代金決濟	제22조 지체상금의 가산 지급		80
第35條 手數料 등의 徵收制限		제25조 사용료 및 수수료 등	81
第36條 去來의 제한		제26조 거래의 제한품목 등	84
第37條 去來秩序의 維持			86
第37條의2 教育訓練 등	제23조 위법행위의 단속	제27조 교육훈련 등	87
第38條 都賣市場法人協會			90
 第 4 章 農水産物 共販場 등			91
第39條 共販場 開設	제24조 공판장의 개설운영	제28조 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91
第39條의2 產地集荷場의 共販場 運營	제25조 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		91
第39條의3 共販場의 去來關係者			92
第39條의4 共販場의 운영 등			93
第39條의5 都賣市場 共販場 운영 등에 관한 特例			94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페이지
第40條 產地販賣制度 確立			95
		제29조 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96
		제30조 공판장의 유통질서 확립	96
第41條 農水産物集荷場의 設置·運營	제26조 농수산물 집하장의 개설·운영		97
第41條의2 農水産物 綜合處理場의 設置·運營			98
第42條 優先支援			98
第43條 圃田賣買의 契約			99
第 5 章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			100
第44條 基金의 設置			100
第45條 基金의 造成	제27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100
第46條 基金의 管理機關	제28조 기금계정의 설치		101
	제29조 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101
第47條 基金의 運用			102
	제30조 기금의 지출대상범위		103
第48條 基金의 會計機關	제31조 기금의 징수		104
	제32조 기금의 수납		104
	제33조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 한도액		104

	제34조 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105
	제35조 지출의 절차		105
第49條 基金의 損費處理	제36조 수표의 발행		106
第50條 基金의 運用計劃			106
	제37조 기금징수액 및 지출액 보고서		106
	제38조 장부의 비치		107
第51條 目的의 사용금지			107
第52條 決算報告			107
第53條 基金의 運用管理 등	제3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108
第 6 章 農水産物 流通機構의 整備			108
第54條 整備基本方針 등			108
第55條 地域別 整備計劃			110
第55조의2 類似都賣市場의 整備		제30조의2 유사도매시장의 정비	110
第56條 市場의 開設·整備命令	제39조 시장의 정비명령		112
第56條의2 都賣市場法人의 代行			113
第57條 流通施設의 近代化 등		제31조 시설기준	114
第57條의2 農水産物小賣業者協同組合	제 40 조 농수산물 소매업자 협동조합		115
第57條의3 農水産物 小賣流通의 改善			116
	제40조의2 농수산물 직판장의 운영 단체	제32조 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116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페이지
第57條의4 農水産物물류센타의 設置		제32조의2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설치	117
		제32조의3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운영	120
第57條의5 流通子會社의 設立		제32조의4 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120
第58條 規格化의 促進 등	제41조 규격화의 촉진		121
第58條의2 出荷物品의 安全性 확보			122
第59條 財政支援			123
第59條의2 實態調査 등		제33조 실태조사 등	123
第59條의3 評價實施		제34조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	124
第 7 章 監 督			126
第60條 報 告			126
第61條 檢 査		제35조 검사의 통지	126
第62條 命 令			127
第63條 業務停止 또는 許可取消 등	제42조 청문절차		128
第63條의2 課徵金 處分			130
第64條 權限의 委任 등	제43조 권한의 위임 등		131

第8章 罰 則			134
第65條 罰 則			134
第65條의2 罰 則			136
第66條 罰 則			137
第67條 罰 則			139
第68條 兩罰規定			140
附 則 ['76.12.31]	부 칙 ['77.7.22]	부 칙 ['77.8.12]	141
第1條 施行日	① 시행일	① 시행일	141
第2條 廢紙法律	② 중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② 경과조치	141
第3條 經過措置	③ 경매사에 관한 경과조치		142
附 則 ['78.12.5]	부 칙 ['79.5.11]		143
	① 시행일		143
	② 경과조치		143
附 則 ['80.1.4]	부 칙 ['82.12.27]	부 칙 ['83.4.26]	143
① 施行日	① 시행일	① 시행일	143
② 經過措置	② 경매사에 관한 경과조치	② 공판장의 중매인·매매참가인 및 경매사에 관한 경과조치	143 144
	③ 공익법인의 공판장에 관한 경과 조치	③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44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페이지
	부 칙 ['84.12.31]		144
	① 시행일		144
	② 중매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145
附 則 ['86.12.31]	부 칙 ['87.6.23]		145
	제 1 조 시행일		145
	제 2 조 지정도매법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45
	제 3 조 경매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46
附 則 ['87.12.4]		부 칙 ['88.5.16]	146
第 1 條 施行日		① 시행일	146
第 2 條 내지 第 4 條 省略		② 공판장경매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146
附 則 ['90.4.7]	부 칙 ['90.8.8]		147
第 1 條 施行日	제 1 조 시행일		147
第 2 條 내지 第 7 條 省略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147
附 則 ['91.12.31]	부 칙 ['91.4.30]		147
第 1 條 施行日			148
第 2 條 내지 第 3 條 省略			148

附 則 ['93.6.11]	부 칙 ['95.5.4]	부 칙 ['94.5.14]	148
	제 1 조 시행일	제 1 조 시행일	148
		부 칙 ['94.10.20]	148
附 則 ['94.11.1]	부 칙 ['95.1.28]	부 칙 ['95.1.28]	148
第 1 條 施行日			148
第 2 條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부 칙 ['96.6.29]	부 칙 ['95.3.8]	149
	부 칙 ['96.8.8]		149
	부 칙 ['97.11.29]		149
第 3 條 仲都賣人의 許可 또는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부 칙 ['95.6.30]	150
第 4 條 都賣市場法人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부 칙 ['97.12.20]	150
		① 시행일	150
		②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150
第 5 條 競買士의 任免에 관한 經過措置			151
第 6 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151
第 7 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151
附 則 ['94.12.31]			152
附 則 ['96.12.12]			152
附 則 ['97.12.13]			152

여 백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 관한法律 [1976. 12. 31] [法律 제2962號]</p> <p>改正 1978.12. 5 法律 第3118號 1980. 1. 4 法律 第3248號 1986.12.31 法律 第3885號 1987.12. 4 法律 第3982號 (財政投融資特別會計法) 1990. 4. 7 法律 第4228號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1991.12.31 法律 第4461號 (基金管理基本法) 1993. 6.11 法律 第4554號 1994.11. 1 法律 第4785號 1994.12.31 法律 第4847號 1996.12.12 法律 第5170號 (財政融資特別會計法) 1997.12.13 法律 第5454號 (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 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p> <p>第 1 章 總 則</p> <p>第 1 條(目的) 이 法은 農水産物の 流通의 圓滑을 기하고 適正한 價 格을 維持하게 함으로써 生産者와 消費者的 利益을 보호하고, 國民</p>	<p>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시행령 [1977. 7. 22] [대통령령 제8635호]</p> <p>개정 1979. 5.11 대통령령 제 9460호 1982.12.27 대통령령 제10961호 1984.12.31 대통령령 제11585호 1987. 6.23 대통령령 제12183호 1990. 8. 8 대통령령 제13063호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1991. 4.30 대통령령 제13365호 전문개정 1994. 5. 4 대통령령 제14243호 개정 1995. 1.28 대통령령 제14515호 1996. 6.29 대통령령 제15087호 (인삼산업법시행령) 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 (해양수산부와 그소속기관직제 및 제정경제원과 그소속기관직제) 개정 1997.11.29 대통령령 제15519호</p> <p>제 1 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유 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p>	<p>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 법률시행규칙 [1977. 8. 12] [농수산부령 제695호]</p> <p>개정 1983. 4.26 농수산부령 제 888호 1988. 5.16 농수산부령 제1003호 전문개정 1994. 5.14 농림수산부령 제1139호 개정 1994.10.20 농림수산부령 제1158호 1995. 1.28 농림수산부령 제1170호 1995. 3. 8 농림수산부령 제1182호 1995. 6.30 농림수산부령 제1197호 1997.12.20 농림부령 제1268호 해양수산부령 제 37호</p> <p>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p>

	<p style="text-align: center;">施 行 令</p>	<p style="text-align: center;">施 行 規 則</p>
<p>生活의 安定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p> <p>第 2 條(正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正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80. 1.4, '86.12.31, '93.6.11, '94.11.1]</p> <p>1. “農水産物”이라 함은 農産物·畜産物 및 水産物과 農林部令이 정하는 林産物을 말한다.</p> <p>2. “農水産物都賣市場”이라 함은 糧穀類·靑果類·花卉類·鳥獸肉類·魚類·貝介類·海藻類 및 林産物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の 全部 또는 一部를 都賣去來하게 하기 위하여 都市地域에 開設하는 市場을 말한다.</p>	<p>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법 제 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양곡부류 : 미곡·맥류·두류·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참깨·땅콩</p> <p>2.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중 신선한 것.</p>	<p>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법 제2조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임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p> <p>1. 목과류 : 밤·잣·대추·호도·은행 및 도토리</p> <p>2. 버섯류 : 표고·송이·목이 및 팽이</p> <p>3. 한약재용 임산물</p>

3. 축산부류 : 조수육류 및 난류
4.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5. 화훼부류 : 절화·절지·절엽·분화
6. 약용작물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 (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5항의 한약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단순가공한 물품으로서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 [신설 '95.1.28]

2의2. “中央都賣市場”이라 함은 國庫 支援으로 開設한 農水産物都賣市場 중 特別市, 廣域市에 소재한 것과 기타 農林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

제 3 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기타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고지원으로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중 도청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한다.[新設 '93.6.11]</p> <p>2의3. “地方都賣市場”이라 함은 中央都賣市場이외의 農水産物都賣市場을 말한다.[新設 '93.6.11]</p> <p>3. “農水産物共販場”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 및 水産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이하 “農林畜水協會”이라 한다) 또는 公益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公益法人”이라 한다)이 農水産物을 販賣하기 위하여 開設·運營하는 事業場을 말한다.</p> <p>4. “都賣市場法人”이라 함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者의 指定을 받고 農水産物을 委託받아</p>	<p>제 3 조(공익법인)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말한다.</p>	<p>소재지에 소재한 것과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개설한 것을 말한다.</p>

販賣를 代行하거나 이를 買取하여 販賣하는 法人(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公共出資法人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仲都賣人”이라 함은 第23條·第39條의3 또는 第39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者의 許可 또는 지정을 받아 農水産物都賣市場 또는 農水産物共販場에 上場된 農水産物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者의 許可를 받은 非上場農水産物을 買取하여 都賣去來를 하는 者를 말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買取를 仲介하는 營業을 할 수 있는 者를 말한다.

제 3 조의2(중도매인의 중개영업) 법 제2조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는 營業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육판매업자의 축산부류의 매수를 중개하는 경우
2. 대량실수요자·대형소매업자·가공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는 경우
3.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하는 경우
4. 정부가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6. “賣買參加人”이라 함은 第24條·第39條의3 또는 第39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者에게 登錄하고 農水產物都賣市場 또는 農水產物共販場에 上場된 農水產物을 직접 買收하는 加工業者, 農水產物小賣業者, 農水產物小賣業者協同組合, 輸出業者, 消費者團體 등 需要者를 말한다.</p> <p>7. “蒐集商”이라 함은 第27條의2·第39條의3 또는 第39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開設者에게 登錄하고, 農水產物을 蒐集하여 農水產物都賣</p>	<p>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을 수매하는 경우 기타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5.1.28]</p>	

市場 또는 農水産物共販場에 出荷하는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

[新設 '94.11.1]

8. “農水産物물류센터”라 함은 農水産物의 出荷經路를 다원화하고 物類費用을 절감시키기 위하여 農水産物의 蒐集·포장·加工·보관·수송·販賣 및 그 정보처리 등 農水産物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施設과 이와 관련된 業務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新設 '94.11.1]

9. “農水産物小賣業者”라 함은 農水産物을 消費者에게 散賣하는 營業을 하는 者를 말한다.[新設 '93.6.11]

10. “農水産物小賣業者協同組合”이라 함은 農水産物의 合理的인 流通과 農水産物小賣業者들의 共同利益 增進을 위하여 農水産物小賣業者를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構成員으로 하는 法人을 말한다. 〔新設 '93.6.11〕</p> <p>第3條(類似名稱의 사용금지) 이 法 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 및 農 水産物共販場이 아니면 農水産物 都賣市場·農水産物共販場 또는 이 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 다.〔全文改正 '86.12.31〕</p> <p>第4條(다른 法律의 適用排除) 이 法에 의한 農水産物都賣市場(이하 “都賣市場”이라 한다)과 農水産物 共販場(이하 “共販場”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流通産業發展法の 規 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80. 1.4, '94.11.1〕</p> <p>第2章 農水産物の 生産 및 出荷調整</p>		

第5條(出荷調整)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 流通의 圓滑과 國民生活의 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賣市場의 都賣市場法人과 共販場의 長에 대하여 去來品目の 出荷 및 販賣調整에 관한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80.1.4, '86.12.31, '94.11.1〕

第6條(生産團地の 指定)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の 需給調節을 위하여 그 生産 및 出荷를 促進 또는 調節할 需要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水産物の 品目を 特性에 따라 지정·準指定品目으로 구분하여 生産團地나 生産水面(이하 “生産團地”라 한다)을 지정하고 生産資金의 融資나 技術指導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86.12.31, '93.6.11〕

제4조(지정·준지정품목의 구분)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지정품목”이라 함은 특정 농수산물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국에 분산되어 생산되는 등 전국적인 생산·출하의 조절이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에서 “준지정품목”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품목외의 농수산물로서 일정한 지역(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産團地의 指定 및 解除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생산이 집중되고 지역 농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지역적인 생산조절이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p> <p>제 5 조(생산단지의 지정요건)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나 생산수면(이하 “생산단지”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지정·준지정품목의 주산지 중에서 그 구역을 확정하여 지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의 재배면적 또는 양식면적(이하 “재배면적 등”이라 한다)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2.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의 출하량이 농림부	

第7條(生産團地 이외에서의 指定品目 生産者の 指定)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生産團地 이외의 지역에서 指定品目 및 準指定品目を 生産하는 者나 그 生産者の 團體를 指定品目 및 準指定品目 生産者로 指定하여 生産資金의 融資와 技術指導 등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다.[改正 '86. 12.31, '93.6.11]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량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할 것

3. 그 구역안에서 생산되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을 효율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공동출하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지 외의 지역의 지정·준지정품목 생산자(이하 “지정품목 등의 생산자”라 한다)는 당해 지정·준지정품목의 재배면적 등과 출하량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면적 또는 수량 이상이거나 그 이상으로 될 것이 확실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제 6 조(생산단지 등의 지정절차)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第6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p>	<p>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생산단지와 지정품목 등의 생산자를 지정한다.</p>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단지 또는 지정품목 등의 생산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 7 조(생산단지 지정의 변경·해제 등) ①시·도지사는 생산단지의 지정구역 또는 지정품목 등의 생산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시·도지사는 생산단지 또는 지정품목 등의 생산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농림부장관 또는</p>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조정사업의 선급금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준지정품목의 생산 및 출하사정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어 생산단지와 지정품목 등의 생산자의 지정을 축소 조정하거나 그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第8條(契約生産)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정 및 準指定

제8조(재배계약 등의 알선·조정)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선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品目の 圓滑한 需給과 適正한 價格을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이 정하는 數量이상의 農水産物을 輸出 또는 加工하거나 消費하는 者에 대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한 生産團地안의 生産者 및 第7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 및 準指定品目 生産者와 栽培契約 또는 養殖契約의 締結을 斡旋·調整할 수 있다.[改正 '86.12.31, '93.6.11]</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지정 및 準指定品目の 원활한</p>	<p>·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배계약 또는 양식계약의 알선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계약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생산단지안의 생산자나 지정품목 등의 생산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농어민의 단체(이하 “지정생산자”라 한다)와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조정하여야 한다.</p> <p>제 8 조의2(생산자단체) 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p>	

需給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農業協同組合·林業協同組合·畜産業協同組合·水産業協同組合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生産者團體(이하 “生産者團體”라 한다)로 하여금 指定品目 生産者와는 生産 및 出荷契約을 準指定品目 生産者와는 生産契約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新設 '93.6.11, '94.11.1]

제 9 조(出荷·損失補償) ①政府는 지정 및 準指定品目 生産者が 生産한 農水産物の 현저한 價格下落으로 生産費 등 適正한 價格保障이 어려운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生産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촌계(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4. 인삼협동조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제 9 조(출하손실의 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출하 농수산물에 대한 손실보상의 보상액 산정기준 및 방법은 당해 농수산물의 매도가격, 생산비 및 보상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림부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의 利益金이 나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損失을 補償할 수 있다. 다만,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生産者團體와 生産 및 出荷契約이나 生産契約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共同出荷하는 農水産物에 한한다.[改正 '94.11.1]</p> <p>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을 補償할 때에는 契約을 체결한 生産者團體를 통하여 補償하고 補償의 一定額을 基金으로 積立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1.1]</p> <p>③政府는 準指定品目 生産者가 生産한 農水産物의 현저한 價格下落으로 걱정한 價格保障이 어려운 경우 이를 補償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自治團</p>	<p>장관이 이를 정하되, 그 내용은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와 생산자가 체결하는 생산·출하계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95.1.28]</p> <p>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의 일정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고자 할 때에는 보상대상인 생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p> <p>③정부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재원의 일부를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익금에서 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자</p>	

體長에게 地方自治團體別로 별도의 基金을 마련하게 할 수 있다.[全文 改正 '93.6.11]

第10條(備蓄事業 등) ①農林部長官은 農水産物(쌀과 보리를 제외한 다)의 需給調節과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農水産物을 備蓄하거나 農水産物의 出荷를 約定하는 生産者에게 그 代金의 一部를 미리 支給하여 出荷를 調整할 수 있다.[改正 '86.12.31, '94.1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農水産物은 生産者 및 生産者團體로부터 收買하여야 한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으로부터 收買하거나 輸入할 수 있다. [新設 '78.12.5, 改正 '86.12.31, '93.6.11, '94.11.1]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비축사업 등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농수산물 비축 또는 출하조정사업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림축수협중앙회”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개정 '95.1.28]

1. 비축농수산물의 수매·수입·포장·수송·보관 및 판매
2. 비축농수산물의 확보를 위한 재배 또는 양식계약이나 선매계약의 체결 및 선급금의 지급
3. 출하계약의 체결, 선급금의 지급 및 출하의 조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의 정산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 農林部長官은 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農水産物을 輸入함에 있어서 國際價格의 급격한 變動에 대비하여 價格安定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新設 '94.11.1]</p> <p>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 또는 出荷調整事業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事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 또는 準指定品目 生産者가 生産한 農水産物을 優先的으로 취급하여야 한다.[改正 '93.6.11]</p> <p>⑤ 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農水産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生産者와 栽培契約 또는 養殖契約을 締結하거나 生産者團體와 先買契約을 締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生産者 또는 生産者團體에게 先金給을 할 수 있다.[新設 '78.12.5, 改正 '86.12.31]</p>	<p>제11조(비축사업 등의 실시절차 등)</p> <p>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 또는 출하조정 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품질·규격 등 사전에 이를 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정하여 동조 제6항에 규정된 기관(이하 “비축사업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p> <p>1. 비축사업</p> <p>가. 구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대상 농수산물의 품목·품질·규격·수량·구매 또는 수입가격·구매 또는 수입시기 및 판매방법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p> <p>나. 재배 또는 양식계약이나 선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대상 농수산물의 품목·수량·규격·품질·가격·납품시기·선금금의 지급시</p>	

⑥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農業協同組合中央會·林業協同組合中央會·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水産業協同組合中央會(이하 “農林畜水協中央會”라 한다) 또는 農水產物流通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改正 '78.12.5, '86.12.31, '93.6.11, '94.11.1]

⑦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 또는 出荷調整事業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을 받은 機關에 대하여 그 事業을 專擔할 機構를 設置·運營하게 할 수 있다.[新設 '78.12.5, 改正 '86.12.31, '94.11.1]

⑧第1項 내지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用 農水產物의 收買·輸入·管理·賣渡 및 栽培契約 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78.12.5, '94.11.1]

기 및 한도액 기타 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출하조정사업 : 출하조정대상 농수산물의 품목·수량·출하시기·선급금의 지급시기 및 한도액 기타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개산액을 기금에서 비축사업 실시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비축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10條의2(過剩生産時의 生産者保護)</p> <p>①農林部長官은 菜蔬類 등 貯藏性이 없는 農水産物의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당해 農水産物을 生産者 또는 生産者團體로부터 收買할 수 있다. 다만, 價格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으로부터 收買할 수 있다.[改正 '86.12.31]</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買한 農水産物은 이를 販賣·輸出 또는 社會福祉團體에 寄贈하거나 기타 필요한 處分을 할 수 있다.</p> <p>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收買 및 處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p>	<p>제12조(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정을 하였으나 기후여건 등으로 인하여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의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생산자보호를 위하여 수확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수산물에 대하여는 산지폐기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p>②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매를 할 경우에는 지정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과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p>	

④第10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改正 '94.11.1]
[本條新設 '78.12.5]

第10條의3(農産物의 輸入推薦 등)

①世界貿易機構(WTO) 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에 따른 大韓民國讓許稅率로 輸入하는 農産物 중 다른 法律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長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産物의 輸入에 대한 推薦業務를 農林部長官이 지정하는 非營利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品目別 推薦物量·추천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長官이 정한다.

③법 제10조의2의 規定에 의한 저장성이 없는 농수산물 의 수매 및 처분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의 規定을 준용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使用用途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하여야 한다.</p> <p>④農林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推薦對象農産物 中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第10條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用農産物로 輸入하거나 生産者團體를 지정하여 輸入하여 販賣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2.31]</p>		<p>제 3 조의2(농산물의 수입추천 등)</p> <p>①법 제10조의3제3항에서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세법시행령 제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통계통합 품목분류 표상의 품목번호 2. 품 명 3. 수 량 4. 총금액 <p>②농림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용농산물로 수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축용농산물로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第10條의4(輸入利益金の徵收 등)

①農林部長官은 第1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추천을 받아 農産物을 輸入하는 者 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品目을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內價格과 輸入價格과의 差額의 범위안에서 輸入利益金を 賦課·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에 納入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利益金を 소정의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

2.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판매하게 할 수 있는 품목 : 오렌지·감귤류[본조시설 '95.1.28]

제3조의3(수입이익금의 징수등) ①

농림부장관이 법 제1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이익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품목 및 금액산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추·마늘·양파·생강·참깨 : 당해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물품대금·운임·보험료 기타 수입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과 제세공과금·보관료·운송료·판매수수료 등 국내판매에 소요되는 비목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 또는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2.31]</p> <p>第11條(備蓄事業등의 損失처리) 農林部長官은 第10條 및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시행에 따라 생기는 減耗·價格下落 및 販賣·輸出·寄贈 기타의 處分으로 인한 原價 損失과 輸送·包裝·防除 등 事業實施에 필요한 管理費는 大統領令이</p>	<p>제13조(비축사업의 비용처리) ①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지급된 자금(이하 “비축사업 등 자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비용 및 판매비용 등의 사업관리비는 農林部長官이 정하는</p>	<p>2. 참기름 : 당해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p> <p>②법 제10조의4의 規定에 의하여 수입이익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수입이익금을 農林部長官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까지 법 제44조의 規定에 의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1.28]</p>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의
費用으로 처리한다.[全文改正 '78.
12.5, 改正 '86.12.31]

일정율의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비축사업 전담기구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비축사업 등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운영·관리비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
액으로 한다.

③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사업의 실시와 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매 및 처분 과정에
서 생긴 농수산물의 감모에 대하여
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안에
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④화재·도난·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
여 비축 또는 수매한 농수산물이 멸
실·훼손·부패 또는 변질된 때의 피
해에 대하여는 비축사업 실시기관이
이를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 3 章 農水産物都賣市場</p> <p>第12條(都賣市場의 開設·運營) ①都賣市場은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部類別로 또는 2이상의 部類를 綜合하여 中央都賣市場은 農林部長官</p>	<p>비축사업 실시기관에 책임지을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로 처리한다.</p> <p>제14조(비축사업등 자금의 별도계정 설치) 비축사업 실시기관은 비축사업 등 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당해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 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계리하여야 한다.</p> <p>제15조(도매시장의 부류구분)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은 양곡부류·청과부류·축산부류·수산부류·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 별로 개설하거나 2이상의 부류를</p>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地方都賣市場은 特別市·廣域市の 경우에는 직접, 市の 경우에는 道知事の 許可를 받아 開設한다.[改正 '86.12.31, '93.6.11, '94.11.1]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所屬公務員으로 구성된 都賣市場管理事務所(이하 “管理事務所”라 한다)로 하여금 施設物管理, 去來秩序維持, 流通從事者 指導監督 등 都賣市場의 管理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管理事務所로는 효율적인 管理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地方公企業法에 의한 地方公社(이하 “管理公社”라 한다) 또는 第17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公共出資法人으로 하여금 都賣市場의 管理業務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1.1]

종합하여 개설한다.

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도시명 및 소재지명을 그 머리에 붙여야 한다.

제 4 조(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의 업무)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개설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3.8]

1. 도매시장 시설물의 관리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開設者は 都賣市場에 그 施設規模·去來額 등을 고려하여 部類別로 적정수의 都賣市場法人을 두어 이를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改正 '93.6.11, '94.11.1]</p> <p>④開設者が 都賣市場을 閉鎖하고자 할 때에는 그 3月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權者(이하 “主務官廳”이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86.12.31, '94.6.11]</p> <p>第13條(開設區域)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은 都賣市場이 開設되는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의 行政區域으로 한다. 다만,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p>	<p>②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명칭에는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p>	<p>3. 도매시장의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p> <p>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p> <p>5. 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부수시설사용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개정 '95.3.8]</p> <p>6.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한 사항의 시행</p>

水産部長官은 당해 地域에 있어서의 農水産物의 圓滑한 流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에 隣接한 一定區域을 그 都賣市場의 開設區域으로 編入하게 할 수 있다.[改正 '86.12.31, '94.11.1]

第14條(開設許可) ①特別市·廣域市 또는 市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의 開設許可를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賣市場開設許可申請書에 業務規程과 運營管理計劃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6.12.31, '93.6.11, '94.1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規程에 정하여야 할 事項과 運營管理計劃書의 作成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

제17조(개설허가의 신청절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허가권자(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개설자가 도매시장의 장소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장소이전허가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

제5조(업무규정)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개정 '95.3.8]

1. 도매시장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거래품목
3.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개장·폐장 일시
4.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공사 또는 공공출자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86.12.31]</p> <p>③開設者가 業務規程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主務官廳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改正 '86.12.31, '93.6.11]</p>	<p>서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p>	<p>하게하는 경우 그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p> <p>5.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p> <p>6.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 매취상장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p> <p>7. 법 제23조(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 허가에 관한 사항</p> <p>8. 법 제24조 및 법 제27조의2(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 및 수집상의 등록에 관한 사항</p>

9.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임면 승인에 관한 사항
10. 법 제28조제2항(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11.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외의자에 대한 판매허가에 관한 사항.
12.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13.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위탁상장수수료·중개수수료·부수시설사용료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요율</p> <p>14. 매매방법·대금결제방법·및 대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p> <p>15.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관리에 관한 사항</p> <p>16.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 시장법인의 부대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p> <p>17.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경 매사의 수에 관한 사항</p> <p>18.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법인의 자기계산매매에 관한 사항</p> <p>19. 제20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정가 매매 또는 수의매매에 관한 사항</p> <p>20.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최저가 격제시에 관한 사항.[신설 '95.6.30]</p>

		<p>2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입하 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에 관한 사항</p> <p>2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입찰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p> <p>23.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 6 조(운영관리계획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의 대지·건물 기타 시설의 종류·규모·구조 및 배치상황 2. 개설에 소요된 투자액의 재원별 조달상황과 부채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환계획 3. 법 제12조제2항에 의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조직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계획
--	--	----------------------------------------------------------------------------------------------------------------------------------------------------------------------------------------------------------------------------------------------------------------------------------------------------------------------------------------------------------------------------------------------------------------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 시장법인의 지정계획 또는 법 제 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공출자 법인의 설립계획[개정 '95.3.8]</p> <p>5.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역 업무의 효율화 방안[신설 '95.3.8]</p> <p>6. 개설후 5년간의 사업계획 및 수 지예산</p> <p>7. 개설되는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대한 당해 지역의 수급실적과 수 급전망에 관한 사항</p> <p>8. 개설되는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에 대한 당해 지역의 도매시장별 및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 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별 거래실적과 거래전망에 관한 사항</p>

제15조(許可基準) ①主務官廳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申請의 內容이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때에는 이를 許可한다.[改正 '86.12.31, '93.6.11]

1. 都賣市場을 開設하고자 하는 場所가 農水産物去來의 中心地로서 適切한 位置에 있을 것.

2. 第5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適合한 施設을 갖추고 있을 것.

3. 業務規程의 內容이 都賣市場의 健全한 運營을 기함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4. 運營管理計劃書의 內容이 充實하고 그 實現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일 것.

②主務官廳은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이 具備되지 아니한 경우에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는 一定期間내에 이를 具備할 것을 條件으로 開設을 許可할 수 있다. 〔改正 '86.12.31, '93.6.11〕</p> <p>第16條(開設者의 義務) ①開設者는 去來關係者의 便益과 消費者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項을 履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都賣市場施設의 整備·改善과 合理的인 管理2. 公正한 去來秩序의 확립과 環境 改善3. 商品性向上을 위한 規格化와 包裝改善 및 鮮度維持의 促進 <p>②開設者는 第1項第1號의 目的을 効果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投資計劃을 樹立, 執行하여야 한다.</p>		

第17條(都賣市場法人의 지정) ①都

賣市場法人은 開設者가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3年이상 10年の 범위내에서 指定 有効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②都賣市場法人의 株主·任職員 및 그와 同一戶籍안에 있는 者は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販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할 수 없다.

제 18 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신청당시의 당해 법인의 대차대조표
5.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경매사 확보계획·농수산물분산계획 및 자금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전문 개정 '95.1.2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이 될 수 있는 者는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法人이어야 한다.</p> <p>1.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保證金과 運轉資金을 自己資金으로 확보하고 있을 것.</p> <p>2. 해당部類 都賣業務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知識이 있고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業務에 2年이상 종사한 經驗이 있는 業務執行擔當任員이 2人이상 있을 것.</p> <p>3. 任員중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p>	<p>②개설자는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p> <p>[신설 '95.1.28]</p> <p>제19조(지정도매법인의 자격요건) 삭제('95.1.28)</p>	

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가 없을 것

4. 任員중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가 없을 것

5. 任員중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 指定取消處分の 原因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者가 없을 것

④都賣市場法人이 第3項第1號 또는 第2號의 要件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3月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⑤都賣市場法人은 그 任員이 第3項第3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

⑥都賣市場法人의 指定節次 기타 지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 령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4.11.1]</p> <p>第17條의2(公共出資法人) ①開設者 는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第2項 各號의 1에 規定된 者를 出資者로 하는 法人(이하 “公 共出資法人”이라 한다)을 設立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公共出資法人에의 出資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한한다. 이 경우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 하는 者의 個別 또는 共同出資額은 總出資額의 50퍼센트를 超過하여야 한다.</p> <p>1. 地方自治團體</p>		

2. 管理公社

3. 農林畜水協 등

4. 당해 都賣市場 또는 당해 都賣市場으로 移轉되는 市場의 農水産物 去來商人과 그 商人團體

5. 都賣市場法人

6. 기타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

③公共出資法人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商法상 株式會社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④公共出資法人은 商法 第3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日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本條新設 '94.11.1]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제 17 조 의 3 (都 賣 市 場 法 人 의 買 取 上 場 義 務) 開 設 者 는 生 產 者 의 保 護 와 都 賣 市 場 의 去 來 活 性 化 를 위 하 여 필 요 하 다 고 인 정 할 때 에 는 都 賣 市 場 法 人 으 로 하 여 금 品 目 및 기 간 을 정 하 여 買 取 上 場 하 게 할 수 있 다 . [本 條 新 設 '93.6.11, 全 文 改 正 '94.11.1]</p> <p>第 18 條 (都 賣 市 場 法 人 의 營 業 場 所)</p> <p>① 都 賣 市 場 法 人 은 都 賣 市 場 의 의 場 所 에 서 農 水 產 物 의 販 賣 業 務 를 하 지 못 한 다 .</p> <p>② 都 賣 市 場 法 人 은 農 水 產 物 의 販 賣 業 務 와 農 林 部 令 또 는 海 洋 水 產 部 令 이 정 하 는 附 帶 業 務 의 의 事 業 을 兼 營 하 지 못 한 다 . [全 文 改 正 '94.11.1]</p> <p>第 19 條 (事 業 年 度) 都 賣 市 場 法 人 의 事 業 年 度 는 政 府 의 會 計 年 度 에 따 른 다 . [改 正 '93.6.11, '94.11.1]</p>		<p>제 7 조 (도 매 시 장 법 인 의 매 취 상 장)</p> <p>삭 제 ['95.3.8]</p> <p>제 8 조 (도 매 시 장 법 인 의 부 대 업 무)</p> <p>① 도 매 시 장 법 인 은 법 제 18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부 대 업 무 로 서 품 목 의 산 지 포 장 · 선 별 · 저 장 등 의 출 하 관 련 사 업 을 법 제 8 조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생 산 자 단 체 (이 하 “ 생 산 자 단 체 ” 라 한 다) 와 공 동 으 로 수 행 할 수 있 다 . [개 정 '95.3.8]</p> <p>② 도 매 시 장 법 인 은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부 대 업 무 를 수 행 하 는 경 우 에 는 법 제 60 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p>

第20條(帳簿의 備置) 都賣市場法人
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하
고 필요한 事項을 記帳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 '93.6.11, '94.11.1]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공동사업추진 약관
2.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생산자단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 9 조(도매시장법인의 장부비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비품대장
5. 일별·품목별·규격별 판매원표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21條(都賣市場法人의 保證金納付 등)</p> <p>①都賣市場法人은 委託出荷者에 대한 代金의 支給과 誠實한 業務遂行을 保證하기 위하여 開設者에게 미리 保證金을 納付하거나 擔保를 제공하여야 하며 運轉資金을 확보하여야 한다.[改正 '93.6.11, '94.11.1]</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 및 運轉資金의 基準과 그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86.12.31]</p>		<p>제10조(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납부 등)</p> <p>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개설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개정 '95.3.8]</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p>

第22條(廢業의 許可 등) ①都賣市場
法人이 營業을 廢業하고자 할 때에
는 그 30日전에 開設者의 許可를 받
아야 한다.[改正 '93.6.11, '94.11.1]
②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③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결제기
한이 종료된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수탁판매한 농수산물의 대금을 지
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하자
의 청구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대신 지급하
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95.3.8]

④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폐업
한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60일내에
보증금을 환급하거나 담보를 해제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廢業許可를 한 때에는 이를 日刊新聞에 公告하여야 한다.[改正 '86.12.31, '93.6.11, '94.11.1]</p> <p>③都賣市場法人이 業務規程에서 정한 指定休業日외의 날에 休業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日전에 開設者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承認을 얻은 때에는 이를 公示하여야 한다.[改正 '93.6.11, '94.11.1]</p> <p>第23條(仲都賣業의 許可) ①仲都賣人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者는 部類別로 당해 都賣市場開設者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p> <p>②仲都賣人은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을 납부할 수 있거나</p>	<p>제20조(중매업의 허가기준) 삭제['95.1.28]</p>	<p>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1조(도매시장법인의 운전자금)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거래예상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p> <p>제12조(중도매업허가절차)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擔保를 제공할 수 있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중에서 이를 許可한다.

1.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免除되지 아니한 者
3.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都賣市場法人의 株主·任職員 및 그와 同一戶籍안에 있는 者로서 당해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仲都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
5.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任員이 있는 法人

③法人인 仲都賣人은 그 任員이 第2項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1. 公同서류 :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

2. 개별서류

가. 개인의 경우

- (1) 본인의 이력서 및 호적등본
- (2) 은행의 잔고증명서

나. 법인의 경우

- (1) 정관
-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 (3) 임원의 이력서 및 호적등본
- (4) 신청당시의 당해법인의 대차 대조표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任員을 지체없이 解任하여야 한다.</p> <p>④仲都賣人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賣買參加人の 去來參加를 방해하는 행위나 正當한 사유없이 集團的으로 競賣 또는 入札에 不參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仲都賣業의 許可를 할 경우 3年이상 10年의 범위내에서 許可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全文改正 '94.11.1]</p> <p>第24條(賣買參加人の 登錄) ①仲都賣人의에 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産物의 去來에 참가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開設者에게 賣買參加人으로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3.6.11, '94.11.1]</p>		<p>제13조(매매참가인의 등록)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개설자는 매매참가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p>

②開設者は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買參加人의 登錄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拒否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削除〔'94.11.1〕

第25條(仲都賣人 및 賣買參加人의 保證金 납부 등) ①仲都賣人 및 賣買參加人은 그가 買收하거나 買收를 仲介하는 農水産物代金의 지급을 擔保하기 위하여 都賣市場法人에게 미리 保證金を 납부하거나 擔保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都賣市場法人과 仲都賣人 사이에 精算組織의 設立 등 代金精算에 관한 特約이 있는 경우에는 그 特約으로 保證金 또는 擔保에 갈음할 수 있다.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매매참가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등) ①법 제25조의 規定에 의하여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이 거래하고자 하는 각 도매시장법인에게 납부 또는 제공하여야 할 보증금 또는 담보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중 2이상의 도매시장법인에게 제1항의 規定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한자는 그 사실을 개설자와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②仲都賣人 과 賣買參加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을 납부하거나 擔保를 제공하여야 당해 都賣市場안의 각 都賣市場法人의 競賣에 참여할 수 있다.[新設 '93.6.11, 改正 '94.11.1]</p>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金의 기준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86.12.31, '94.11.1]</p> <p>第25條의2(仲都賣人の 業務範圍 등의 特例) ①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仲都賣人은 都賣市場안에 設置된 共販場(이하 “都賣市場 共販場”이라 한다)에서도 그 業務를 행할 수 있다.</p> <p>②仲都賣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p>		<p>그가 거래하고 있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모든 도매시장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5.3.8]</p>

여 都賣市場共販場에서 業務를 행하는 경우 保證金納付 등에 관하여는 第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共販場開設者”로, “各 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共販場”으로 본다.
〔本條新設 '94.11.1〕

第26條(競賣士의 任免) 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서 公正하고 신속한 去來를 위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이상의 競賣士를 두어야 한다.〔改正 '93.6.11, '94.11.1〕
②競賣士는 競賣士資格試驗에 合格한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중에서 都賣市場法人이 開設者의 승인을 얻어 이를 任免한다.〔改正 '93.6.11, '94.11.1〕

제21조(경매사의 임면)
삭제['95.1.28]

제15조(최소 경매사 수)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최소경매사 수는 2인이상으로 하되,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거래물량 등을 고려하여 업무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16조(경매사의 자격시험)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유통공사의장이 실시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공사의장이 시험을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1.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나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p> <p>2.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p> <p>3.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또는 宣告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p> <p>4.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任命의 승인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p> <p>③開設者는 競賣士가 그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命에 違反하거나 顯著하게 不公正한 行爲를 한 때에는 그 任命에 대한 承認을 취소할 수 있다.</p> <p>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士資格試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p>		<p>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 및 방법 등 시험실시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험일 60일 전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5.3.28]</p> <p>③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필기시험 과목은 도매시장 관계법령, 경매실무 및 유통상식으로 한다.</p> <p>제17조(시험합격자의 등록 및 자격증 교부) ①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p>

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11.1]

第27條(競賣士의 任務 및 身分) ①

競賣士는 다음 各號의 任務를 수행한다.

1.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上場農水産物에 대한 競賣優先順位의 決定
2. 上場農水産物의 價格評價
3. 上場農水産物의 競落者의 決定

②競賣士는 開設者의 許可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業務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地位를 이용하여 特定人의 利益에 偏重되는 不公正한 行爲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競賣士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자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競매사자격등록부에 이를 기재하고, 競매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실비의 징수) ①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의 실시 및 競매사자격증의 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실비는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장이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27條의2(蒐集商의 登錄) ①農水産物을 蒐集하여 都賣市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部類別로 開設者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生産者團體가 構成員의 生産物을 出荷하는 경우 2. 都賣市場法人이 第17條의3 또는 第28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上場하는 경우 3. 仲都賣人이 第28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賣買하는 경우 4. 기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 <p>②都賣市場法人의 株主·任職員, 仲</p>		<p>제18조의2(수집상의 등록) ①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상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자가 정한 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개설자는 수집상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수집상은 등록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개설자가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5.3.8]</p> <p>제18조의3(수집상의 등록예외) 법 제27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p>

都賣人 및 그와 同--戶籍안에 있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
해 都賣市場에서 蒐集商의 業務를
할 수 없다.

③開設者는 第1項의 登錄申請이 있
는 때에는 正當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蒐集商은 登錄된 都賣市場에서
農水産物の 出荷業務외의 販賣·買
收 또는 仲介業務를 할 수 없다.

⑤開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여야 하는 者가 登錄을
하지아니하고 蒐集商의 業務를 행
하는 때에는 都賣市場에의 出入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⑥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蒐集
商의 公定去來 촉진을 위하여 필요

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수산물물류센터, 수출업자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2.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취
하여 판매하는 경우
3. 기타 개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95.3.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1.1, 施行日 '95.7.1]</p> <p>第28條(受託販賣의 原則) ①都賣市場에서 都賣市場法人이 행하는 都賣去來는 受託販賣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產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自己計算으로 賣買할 수 있다.[改正 '86.12.31, '93.6.11, '94.11.1]</p> <p>②仲都賣人은 上場된 農水産物외의 農水産物 去來를 할 수 없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上場去來가 적합하지 아니한 農水産物 기타 이에 준하는 農水産物로서 그 品目과 기간을 정하여 開設者의 許可를 받은 農水産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4.11.1, 施行日 '95.7.1]</p>		<p>제19조(수탁판매의 예외)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0조제2항 단서 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수매하는 경우 2.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매취상장하는 경우 3.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취하여 판매하는 경우 <p>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p>

③第2項 但書の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의 去來에 관하여는 第18條, 第20條 내지 第22條, 第31條, 第34條, 第35條第1項第1號·第2號 및 第6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都賣市場法人”은 “仲都賣人”으로 본다.[新設 '94.11.1, 施行日 '95.7.1]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3.8]

1.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물품의 품목·수량·원산지·매수가격·판매가격 및 출하자
2. 자기계산으로 매매한 이유

제19조의2(비상장거래 허가대상 농수산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이 거래할 수 있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인 농수산물
2. 품목의 특성으로 인하여 당해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인 농수산물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29條(賣買方法) 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産物은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으로 이를 賣買한다. 다만,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定價 또는 隨意賣買를 할 수 있다.</p>		<p>3. 기타 尙장거래에 의하여 中도매인이 해당농수産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본조신설 '95.6.30]</p> <p>제20조(매매방법의 예외) ①법 제2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법인이 도매시장에 尙장된 농수産물의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p> <p>1.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는 거래가 곤란하다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産부장관이 인정하는 품목중 업무규정으로 정한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개정 '95.6.30]</p> <p>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자기계산으로 매매하는 경우</p>

- | | | |
|--|--|-------------------------------------------------------------------------------------------------------------------------------------------------------------------------------------------------------------------------------------------------------------------------------------------------------------------------------------------------------------------|
| | | <p>3.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신설 '95.3.8]</p> <p>4.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p> <p>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가. 거래량이 적은 품목
 나. 경매 또는 입찰이 종료된 후 입찰된 품목
 다.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되지 아니한 물품</p> <p>6. 저장성이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경매시작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품목으로서 개</p> |
|--|--|-------------------------------------------------------------------------------------------------------------------------------------------------------------------------------------------------------------------------------------------------------------------------------------------------------------------------------------------------------------------|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30條(競賣 또는 入札方法) 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産物을 受託한 順位에 따라 競賣 또는 入札의 方法으로 最高價格提示者에게 販賣하여야 한다. 다만, 出荷者</p>		<p>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품목. 다만, 당일 해당 품목 반입물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p> <p>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때에는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개설자 또는 관리공사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이유 <p>제20조의2(거래성립 최저가격의 제시의 요건) 법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거래성립 최저가격의 제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p>

가 書面으로 제출하는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要件을 갖추어 去來成立 最低價格을 제시하였을 경우에는 그 價格未滿으로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改正 '94.11.1, 但書 施行日 '95.7.1]

②開設者는 신속한 流通實現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量入荷品·標準規格品 등을 우선적으로 販賣하게 할 수 있다.[改正 '94.11.1]

1.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출하자 및 거래성립 최저가격 등이 기재된 서면일 것
2. 출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농수산물의 판매과정에 입회한다는 뜻이 기재된 서면일 것.[본조신설 '95.6.30]

제21조(대량입하품·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개설자는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하여 우선경매 실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 출하품
3.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출하규격품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競賣 또는 入札의 방법은 電子式을 原則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擧手手指式·記錄式·書面入札式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公開競賣實現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農林部長官·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開設者는 品目別, 都賣市場別로 競賣方式을 제한 할 수 있다.[改正 '94.11.1]</p> <p>④競賣士의 지정은 사전 非公開 無原則으로 한다.[全文改正 '93.6.11]</p>		<p>4.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품목</p> <p>제22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수지식·기록식·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3.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비축 또는 수입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2. 기타 품목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설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제23조(판매원표 관리) ①경매에 사용되는 판매원표에는 출하자명·품명</p>

第30條의2(去來의 特例) 都賣市場法人은 入荷量이 현저히 많아 殘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開設者의

·등급·수량·경락가격·매수인·담당 경매사 등을 상세히 기입하며, 그 양식은 개설자가 정한다.

②경매사는 개설자가 미리 일련번호를 부과한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입하물품의 부패·손상 등의 사고 발생이나 판매원표의 망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사후에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기타 판매원표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도매시장법인의 거래에 관한 특례) ①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상장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許可를 받아 仲都賣人 또는 賣買參加人외의 者에게 販賣할 수 있다. 이 경우 仲都賣人 또는 賣買參加人의 買收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本條新設 '94.11.1]</p>		<p>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잔품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2. 당해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 판매한 후 잔품이 발생한 경우3. 기타 개설자가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업무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개설자에게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도매시장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중도매인 또는</p>

第30條의3(出荷者에 대한 損失補填)

都賣市場法人은 受託한 農水産物이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價格으로 販賣되었을 경우 出荷者에게 그 差額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利益金의 일부를 積立하여야 하며,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財源의 범위내에서 出荷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1.1]

第31條(入荷數量 등의 揭示) 都賣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없이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 및 출하자·매수인
2.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외의 자에게 판매한 이유[본조신설 '95.3.8]

제24조(입하수량 등의 게시 등) ①도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市場法人은 그가 去來하는 主要品 目的 入荷數量 및 去來價格 등을 每日 당해 市場안의 보기 쉬운 곳 에 揭示하여야 한다.[改正 '93.6.11, '94.11.1]</p> <p>第32條(受託의 拒否禁止 등) 都賣市 場法人과 競賣士는 그 業務를 수행 함에 있어서 正當한 事由없이 入荷 된 農水産物의 受託 또는 受託받은 農水産物의 販賣를 拒否 또는 忌避 하거나 去來關係人에게 不當한 差 別待遇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改 正 '93.6.11, '94.11.1]</p> <p>第33條(賣買農水産物의 引受 등) ① 都賣市場에 上場된 農水産物의 買 收人은 賣買가 成立한 즉시 그 農 水産物을 引受하여야 한다.</p>		<p>매시장법인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일 경매가 개시되기 전까 지 주요품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전 일거래량 및 거래가격과 그 날의 주요 산지시세 및 입하수량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p> <p>②도매시장법인은 품목별 거래량· 거래가격·등급 및 산지 등 거래정 보를 매일 개설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이 설치된 경우 에는 전송보고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p>

②都賣市場法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買收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買收한 農水産物의 引受를 拒否 또는 태만히 한 때에는 當해 買收人의 負擔으로 그 農水産物을 一定期間 保管하거나 그 履行을 催告하지 아니하고 그 賣買를 解除하여 다시 賣買할 수 있다.[改正 '93.6.11, '94. 11.1]

③第2項의 경우에 差損金이 생긴 때에는 當초의 買收人이 이를 負擔한다.

第33條의2(荷役業務) ①開設者는 都賣市場내 荷役業務의 효율화를 위하여 荷役體制의 改善, 荷役機械化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出荷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시행하여야 한다.</p> <p>②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내의 荷役業務에 대하여 荷役專門業體 등과 用役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1.1]</p> <p>第34條(代金決濟) ①都賣市場法人은 受託한 農水産物이 賣買된 때에는 그 代金の 全部를 즉시 決濟하여야 한다. 다만, 代金の 支給方法에 관하여 都賣市場法人과 委託者 사이에 特約이 있는 때에는 그 特約에 의한다.[改正 '93.6.11, '94.11.1]</p> <p>②都賣市場法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代金の 全部를 支給하지 아니한 때에는 未支給된 金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遲滯價金을 加算하여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93.6.11, '94.11.1]</p>	<p>제22조(지체상금의 가산지급) 도매 시장법인이 수탁하여 판매한 농수산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개설자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p>	

第35條(手數料 등의 徵收制限) ①開

設者, 都賣市場法人 또는 仲都賣人
은 다음 各號의 金額외에는 어떠한
名目으로도 金員을 徵收할 수 없다.
[改正 '86.12.31, '93.6.11, '94.11.1]

1. 開設者가 都賣市場法人으로부터
都賣市場의 維持·管理에 필요한
最少限의 費用으로서 徵收하는 都
賣市場使用料
2. 都賣市場法人이 農水産物의 販賣
를 委託한 出荷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一定率에 해당하는 委託
上場手數料
3. 仲都賣人이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의 買收를 仲介한

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95.1.28]

제25조(사용료 및 수수료등) ①법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
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시설
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설자의 소
유가 아닌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사
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
(이하 이항에서 “총사용료”라 한
다)은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
의 1천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2. 각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할 사용
료는 도매시장법인의 거래금액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매장면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경우에 이를 買收한 者로부터 徵收하는 去來額의 一定率에 해당하 는 仲介手數料</p> <p>4. 開設者가 仲都賣人店舖 등 都賣 市場에 부수되는 施設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施設 에 대하여 使用者로부터 徵收하는 施設使用料</p> <p>5. 開設者가 都賣市場의 쓰레기 발 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 部令이 정하는 品目中 非規格 出 荷物量에 대하여 業務規定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出荷者·都賣市場 法人·仲都賣人·賣買參加人으로부 터 徵收하는 쓰레기유발 負擔金 〔新設 '94.11.1, 施行日 '96.1.1〕</p>		<p>적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료의 총 액은 총사용료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p> <p>②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상장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곡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2.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3.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4.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안에 도축 장이 설치된 경우 축산물위생처리 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도살 ·해체수수료는 이에 포함되지 아 니한다) 5. 화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6. 약용작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

②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使用料 및 手數料의 料率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86.12.31, '94.11.1]

③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은 農水産物의 規格出荷 促進을 위한 사업의 財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新設 '94.11.1, 施行日 '96.1.1]

의 50

③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規定에 의한 중개수수료의 最高限度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으로 한다.

④법 제35조제1항제4호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別표1의 부수시설중 중도매인사무실 및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 그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5.3.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36條(去來의 제한)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去來秩序의 확립과 品質向上을 통한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p>		<p>⑤법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품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추, 무 2. 기타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 쓰레기 유발부담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품목[본항신설 '95.6.30] <p>제26조(거래의 제한품목 등)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 개설구역 또는 공판장이 개설된 시의 구역안에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p>

정하는 品目에 대하여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이 開設된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の 區域안에서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流通過程을 거치지 아니하고 販賣하거나 販賣을 目的으로 買收하는 行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生産者團體의 直去來, 公益團體의 直販, 他地域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을 經유한 物品 등은 예외로 한다.[全文改正 '93.6.11, 改正 '94.11.1]

있는 품목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농수산물품의 품목·지역·기간 및 적용제의 대상물품 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5.3.8]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의 직거래, 공익단체의 직판, 타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을 경유한 물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3.8]

1.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소비지 연쇄화사업자 등과의 서면계약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37條(去來秩序의 維持) ①누구든지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施設物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p>		<p>에 의하여 생산·공급하는 물품</p> <p>2. 생산자단체나 소비자단체 등 공익 단체가 소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물품</p> <p>3. 타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거래된 물품으로서 당해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 개설자가 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을 확인한 물품</p> <p>4. 타지역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법 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으로서 당해 중도매인이 반출지·반출물량 및 반출차량을 확인한 물품</p>

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되며, 開設者는
都賣市場에서의 去來秩序가 유지되
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4.11.1]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產部長官,
道知事 또는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公務員으
로 하여금 이 법을 違反하는 者를
團束하게 할 수 있다.[改正 '86.12.
31, '93.6.11, '94.11.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團束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
를 關係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37條의2(教育訓練 등) ①農林部長
官 또는 海洋水產部長官은 農水產
物の 流通改善을 促進하기 위하여
競賣士·仲都賣人 등 農林部令 또는

제23조(위법 행위의 단속) 농림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
속지침을 정할 수 있다.[개정 '95.1.
28]

제27조(교육훈련 등) ①법 제37조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5.3.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流通從事者에 대하여 教育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改正 '94.11.1]</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訓練을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機關에 委託하여 실시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공출자법인의 임·직원 및 경매사 2. 법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의 임·직원 및 경매사 3. 법 제23조(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 4. 법 제24조(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 5. 법 제27조의2 또는 법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수집상 6. 농수산물의 출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는 산지 농어민, 농수산

		<p>물의 저장·가공업에 종사하는 자 기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은 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제1항 각호의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농수산물유통공사 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도 매시장법인의 임원으로 신규임용되 었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 는 그 임용 또는 허가후 1년 이내 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경매사 로 임용된 자는 매 5년마다 교육훈 련을 받아야 한다.</p> <p>③교육훈련의 위탁을 받은 농수산 물유통공사의 장은 매년도의 교육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농림부장관</p>
--	--	----------------------------------------------------------------------------------------------------------------------------------------------------------------------------------------------------------------------------------------------------------------------------------------------------------------------------------------------------------------------------------------------------------------------------------------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38條(都賣市場法人協會) ①都賣市場法人은 都賣市場의 健全하고 自律的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農水産物都賣市場法人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改正 '93.6.11, '94.11.1]</p> <p>②協會를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10人이상이 發起人이 되어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過半數의 同意을 얻어 設立總會를 開催하고, 定款을 作成하여 農林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86.12.31]</p> <p>③協會는 法人으로 한다.</p> <p>④協會는 農林部長官이 監督한다. [改正 '86.12.31]</p>		<p>또는 海陽수産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⑤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事項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 4 章 農水産物共販場 등

第39條(共販場 開設) 農林畜水協 등 또는 共益法人이 共販場을 開設하고자 할 때에는 市·道知事の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80.1.4, '86.12.31, '93.6.11, '94.11.1]

第39條의2(産地集荷場の 共販場運營) 農林畜水協 등은 市·道知事の 승인을 얻어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運營하고 있는 農水産物集荷場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한 施設基準을 갖춘 集荷場을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共販場으로 運營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1.1]

제24조(공판장의 개설운영)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거래하기 위하여 개설·운영한다.

제25조(공판장의 개설승인 신청)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축수삼협 등”이라 한다) 또는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판장 개설승인신청서에 당해 공판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제28조(공판장의 개설승인절차) ①농림축수협 등 또는 공익법인은 법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장을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설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판장 업무규정. 다만, 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는 공판장은 제외한다.
2. 운영관리계획서
3.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서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39條의3(共販場의 去來關係者) ① 共販場에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 蒐集商 및 競賣士를 둔다.</p> <p>②共販場의 仲都賣人은 共販場 開 設者가 지정한다. 이 경우 仲都賣人 지정 등에 관하여는 第23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③共販場에서 仲都賣人외에 共販場 에 上場된 農水産物의 去來에 참가 하고자 하는 者는 共販場 開設者에 게 賣買參加人으로 登錄하여야 한 다. 이 경우 賣買參加人 登錄에 관 하여는 第24條第2項의 規定을 準用 한다.</p>	<p>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시·도지사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1.28]</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판장 업 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하여 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④農水産物을 蒐集하여 共販場에 出荷하고자 하는 者는 共販場 開設 者에게 蒐集商으로 登錄하여야 한다. 이 경우 蒐集商 登錄 등에 관하여는 第27條의2第1項 但書·第3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을 準用한다.[施行日 '95.7.1]

⑤共販場의 競賣士는 共販場 開設 者가 任免한다. 이 경우 競賣士의 資格基準 및 任務 등에 관하여는 第26條第2項 및 第27條의 規定을 準用한다.[本條新設 '94.11.1]

第39條의4(共販場의 운영 등) 共販 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28條 내지 第30條, 第30條 의2 및 第31條 내지 第35條의 規定 을 準用하되, 共販場의 규모·거래물 량 등에 비추어 당해 規定을 準用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共販場의 경우에는 그 開設者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業務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 및 去來方法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11.1〕</p> <p>第39條의5(都賣市場共販場운영등에 관한特例) ①都賣市場共販場의 운영 및 去來方法 등에 관하여는 第28條 第1項, 第29條, 第30條, 第30條의2 및 第31條 내지 第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p> <p>②都賣市場共販場의 仲都賣人에 관하여는 第23條, 第25條, 第25條의2, 第28條第2項·第3項, 第35條 및 第3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 경우 第25條의2第1項중 “都賣市場안에</p>		

設置된 共販場(이하 “都賣市場共販場”이라 한다)”를 “당해 都賣市場”으로 본다.

③都賣市場共販場の 賣買參加人에 관하여는 第24條 및 第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④都賣市場共販場の 蒐集商에 관하여는 第27條의2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4.11.1, 第4項 施行日 '95.7.1]

第40條(產地販賣制度確立) ①農林畜水協 등 또는 公益法人은 生産地에서 出荷되는 主要品目에 대하여 產地競賣制를 실시하거나 系統出荷를 擴大하는 등 生産者保護를 위한 販賣對策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改正 '94.11.1]

②削除['94.11.1]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農林畜水協 등 또는 公益法人은 第30條의 競賣 또는 入札방법에 따라 倉庫競賣나 포전競賣 등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93.6.11, 改正 '94.11.1]</p>		<p>제29조(창고경매 및 포전경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은 자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경매나 포전경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산농가로부터 위임동의서를 받아 창고 또는 포전상태로 상장하되, 품목의 작황·품질·생산량 및 시중가격 등을 감안하여 사전에 예정가격을 할 수 있다.[개정 '95.3.8]</p> <p>제30조(공판장의 유통질서 확립)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한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판장 개설자에 대하여 공판장의 중도매인·매매참가인·수집상 또는 경매사에 대한 지정·등록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p>

第41條(農水產物集荷場의 設置·運營)

①農林畜水協 등은 農水產物을 大量 消費地에 직접 出荷할 수 있는 流通 體制를 確立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高速道路邊 등에 農水產物集荷 場을 設置·運營한다.[改正 '86.12.31, '94.11.1]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農林畜水 協 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農 水產物集荷場을 設置할 때에는 生 產者의 出荷便宜와 農水產物集荷場 의 效果的인 運營을 도모할 수 있 도록 그 立地選定과 道路網의 開設 에 協助하여야 한다.[改正 '86.12. 31, '94.11.1]

제26조(농수산물집하장의 개설·운영)

①농림축수삼협 등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농수산물 집하장은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한 적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95.1.28]

②농림축수삼협 중앙회의 장은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95.1.28]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공판장 개설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95.3.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農林畜水協 등은 農水産物集荷場에 出荷되는 品目の 規格化를 促進하기 위한 適切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農水産物集荷場에는 當日 또는 前日の 品目別 去來價格을 揭示하여야 한다.[改正 '86.12.31, '94.11.1]</p> <p>第41條의2(農水産物綜合處理場의 設置·運營) ①生産者 團體는 農水産物の 選別·包裝·加工 등을 促進하기 위하여 産地에 農水産物 綜合處理場을 설치할 수 있다.</p> <p>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綜合處理場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敷地確保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1.1]</p> <p>第42條(優先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p>		

團體는 그가 設置한 農水產物流通 施設에 대하여 生産者團體 또는 農林畜水協中央會나 公益法人의 利用 要請이 있을 때에는 施設利用·面積 配定 등에 있어서 優先적으로 편의 를 제공하여야 한다.[改正 '80.1.4, '86.12.31, '94.11.1]

第43條(圃田賣買의 契約) ①農林部 長官이 정하는 菜蔬類 등 貯藏性이 없는 農產物의 圃田賣買의 契約은 書面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農業協同組合과 그 中央會는 圃田賣買의 標準契約書 樣式을 정하여 이를 契約書의 作成基準으로 이 용할 것을 勸獎하여야 한다. ③農林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 및 消費者의 보호나 農產物의 價格과 需給의 안정을 위하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對象品目·地域과 申告期間 등을 정하여 契約當事者에게 圃田賣買契約의 내용을 申告하도록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4.11.1〕</p> <p>第 5 章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p> <p>第44條(基金의 設置) ①政府는 農水産物(쌀과 보리를 제외한다)의 圓滑한 需給과 價格安定을 도모하고 流通施設의 近代化를 促進하기 위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改正 '80.1.4, '94.11.1〕</p> <p>②削除〔'93.6.11〕</p> <p>第45條(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p>	<p>제27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p>	

各號의 資金으로 造成한다.

1. 政府의 豫算에 의한 出捐金
2. 基金의 決算上 剩餘金
3. 第10條의4第2項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納入되는 金액.[新設 '94.12.31]

②基金의 運營上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基金의 負擔으로 財政融資特別會計·韓國銀行 또는 다른 基金으로부터 資金의 長期 또는 一時借入을 할 수 있다.[改正 '86.12.31, '87.12.4]

第46條(基金의 管理機關) ①基金은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農林部長官이 運用·管理한다.[改正 '86.12.31]

②農林部長官은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의 一部를 第10條第6項

의 수입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차입금 및 납입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의 회수금, 비축사업 등 자금의 회수금과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으로 한다.[개정 '95.1.28]

②기금의 지출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출하손실보상금,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상환금,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대출금·지출금 및 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로 한다.

제28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운용·관리사무의 위탁) 농림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의 規定에 의하여 備蓄事業 등을 委託한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全文改正 '78.12.5, 改正 '86.12.31, '94.11.1]</p> <p>第47條(基金의 運用)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融資 또는 貸出할 수 있다.[改正 '86.12.31, '93.6.11, '94.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農水産物의 價格調節과 生産·出荷의 獎勵 또는 調整 2. 農水産物의 輸出促進 3. 農水産物의 保管·管理 및 加工 4. 都賣市場과 共販場에의 出荷促進·施設 및 運營資金 5. 農水産物의 商品性 提高 6. 農林部長官이 農水産物의 流通構造改善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事業 	<p>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사업 등의 실시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재산의 취득·운영·처분에 관한 업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위탁한다.</p>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事業을 위하여 支出한다.[改正 '90.4.7]

1. 第10條 및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 및 당해 事業의 管理
2. 基金이 管理하는 流通施設의 設置·取得 및 運營
3.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12條第6項에 의한 損失補填과 同條第8項에 의한 生産調整을 위한 지원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水産物의 流通構造改善 및 價格安定을 위하여 필요한 事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融資를 받을 수 있는 者는 韓國銀行·農林畜水協中央會·人蔘協同組合中央會 및 農水産物流通公社로 하고, 貸出을 받을 수 있는 者는 農林部長官이 第1項 各號에 規定한 事業을

제30조(기금의 지출대상범위) 법 제4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농수산물의 가공·포장 및 저장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개정 '97.11.29]
2.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연구·홍보·교육훈련 및 해외시장개척 [개정 '97.11.29]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效率的으로 施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者로 한다.[全文改正 '78.12.5, 改正 '86.12.31, '93.6.11, '94.11.1]</p> <p>第48條(基金의 會計機關) ①農林部長官은 소속公務員중에서 基金의 支出原因行爲와 徵收에 관한 事務를 擔當하는 基金出納命令官(이하 “出納命令官”이라 한다)과 基金의 收入 및 支出事務를 擔當하는 基金出納公務員(이하 “出納公務員”이라 한다)을 任命하여야 한다.[改正 '86.12.31]</p> <p>②農林部長官은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의 一部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을 받은 機關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p>	<p>제31조(기금의 징수) ①기금출납명령관(이하 “출납명령관”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p> <p>제32조(기금의 수납) 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체없이 출납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33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p>	

중에서 基金出納員을 任命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員은 出納公務員의 職務을 행한다. [新設 '78.12.5, 改正 '86.12.31]

③農林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納命令官과 出納公務員, 基金出納擔當理事와 基金出納員을 任命한 때에는 監査院·財政經濟院長官 및 韓國銀行總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改正 '78.12.5, '86.12.31]

④會計關係職員등의責任에 관한法律中 財務官과 歲入徵收官에 관한 規定은 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員에게 이를 準用한다.[改正 '78.12.5]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출납명령관에게 배정하고, 출납명령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4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①농림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안에서 기금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지출의 절차) 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49條(基金의 損費處理)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費用이 생긴 때에는 基金에서 損費로 처리하여야 한다.[改正 '78.12.5, '86.12.31]</p> <p>1. 第10條 및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事業을 實施한 결과 생긴 缺損金</p> <p>2. 借入金의 利子 및 基金運營상 필요한 經費</p> <p>第50條(基金의 運用計劃) ①農林部長官은 每會計年度 開始전에 基金運用計劃을 樹立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改正 '86.12.31]</p> <p>②第1項의 基金運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p> <p>1. 基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事項</p>	<p>제36조(수표의 발행) ①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출납공무원이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 대체를 위하여 대체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p> <p>②출납공무원은 한국은행·농림축수협중앙회·인삼협동조합중앙회 및 농수산물유통공사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기금운용상 필요한 경비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5.1.28]</p> <p>제37조(기금징수액 및 지출액보고서) 출납명령관은 기금수입징수액보고서 및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액보고서를</p>	

2. 融資 또는 貸出의 目的, 對象者, 金利 및 期間에 관한 事項

3. 기타 基金運營上 필요한 事項

③第2項第2號의 融資期間은 1년이 내로 한다. 다만, 施設資金의 融資 등 資金의 使用目的上 1년이내로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條(目的외 사용금지) 基金을 融資받은 者는 融資金을 融資할 때에 指定한 目的 이외의 目的에 사용할 수 없다.

第52條(決算報告) 農林部長官은 會計年度마다 前年度의 基金運用決算報告書를 作成하여 翌年 2月末日까지 財政經濟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6.12.31, '91. 12.31〕

각각 매월말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장부의 비치) ①출납명령관은 기금관리부와 기금지출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관리 및 지출원인행위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기금지출부와 기금수표발행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53條(基金의 運用管理 등)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事項이외의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p> <p>第 6 章 農水產物流通機構의 整備</p> <p>第54條(整備基本方針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產部長官은 農水產物의 圓滑한 需給과 流通秩序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各號의 事項을 포함한 農水產物流通機構整備基本方針(이하 “基本方針”이라 한다)을 樹立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80.1.4, '86.12.31, '93.6.11, '94.11.1]</p>	<p>제38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농림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p>[신설 '97.11.29]</p>	

1. 第57條第2項의 施設基準에 未達하거나 去來物量에 比하여 施設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都賣市場 및 共販場의 施設整備에 관한 事項
2. 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水 産物을 販賣하는 商人의 整備에 관한 事項
3. 都賣市場 및 共販場의 施設의 改 替 및 移轉에 관한 事項
4. 競賣士 및 仲都賣人의 價格造作 防止에 관한 事項
5. 生産者와 消費者保護를 위한 流 通機構의 奉仕競爭體制의 확립과 流通經路의 短縮에 관한 事項
6. 運營實績이 不振하거나 休業중인 都賣市場의 整備 및 都賣市場法人 의 交替에 관한 事項
7. 小賣商 施設改善에 관한 사항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55條(地域別 整備計劃) ①市·道知事는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이 告示된 때에는 그 基本方針에 따라 地域別 整備計劃을 樹立하고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86.12.31, '94.11.1]</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別 整備計劃의 內容이 基本方針에 符合되지 아니하거나 事情의 變更등으로 實効性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一部를 修正 또는 補完하여 承認할 수 있다.[改正 '86.12.31]</p> <p>第55條의2(類似都賣市場의 整備) 市·道知事는 農水産物의 公正去來秩序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p>		<p>제30조의2(유사도매시장의 정비) ① 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p>

農水産物類似都賣市場의 整備를 위하여 類似都賣市場區域을 지정하고, 그 구역내 農水産物都賣業者의 去來方法改善·施設改善·移轉對策 등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整備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4.11.1]

을 수립하여야 할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
 2. 국고지원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건설을 추진 중인 지역
 3. 기타 시·도지사가 농수산물의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② 유사도매시장의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사도매시장 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역범위
 2. 구역안 농수산물 도매업자의 거래방법 개선방안
 3. 유사도매시장의 시설의 개선 및 이전대책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책시행시의 대상자선발기준(본조신설 '95.3.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56條(市場의 開設·整備命令) ①農 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方針을 効果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賣市場 또 는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 과 共販場의 統合·移轉 또는 閉鎖 를 命할 수 있다.[改正 '80.1.4, '86. 12.31, '94.11.1]</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은 農水産物의 圓滑한 需給을 기하 기 위하여 特定한 地域에 都賣市場 이나 共販場을 開設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地域을 管轄 하는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市長 이나 農林畜水協 등 또는 公益法人</p>	<p>제39조(시장의 정비명령) ①농림부 장관 또는 海陽수산부장관이 법 제 5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도매시 장이나 公판장의 통합·이전 또는 폐쇄를 명할 때에는 3월이상의 기 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 항을 비교 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근 2년간의 거래실적과 그 추세 2. 입지조건 3. 시설현황 4. 통합·이전 또는 폐쇄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손실의 정도 <p>②농림부장관 또는 海陽수산부장관 이 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도매시 장이나 公판장의 통합·이전 또는</p>	

의 長에 대하여 都賣市場이나 共販場의 開設을 命할 수 있다.[改正 '80.1.4, '86.12.31, '94.11.1]

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으로 인하여 발생한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 또는 都賣市場法人의 損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補償하여야 한다.[改正 '80.1.4, '86.12.31, '93.6.11, '94.11.1]

第56條의2(都賣市場法人의 代行) ①

都賣市場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이 都賣業務를 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을 代行하거나 管理公社 또는 다른 都賣市場法人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都賣市場

폐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法人의 業務를 代行하는 者에 대한 業務處理基準 기타 代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都賣市場開設者가 이를 정한다.[本條新設 '94.11.1]</p> <p>第57條(流通施設의 近代化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流通施設의 近代化을 促進하기 위하여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나 都賣市場法人에 대하여 農水産物의 販賣·輸送·保管·貯藏施設의 改善·整備를 命할 수 있다.[改正 '80.1.4, '86.12.31, '93.6.11, '94.11.1]</p> <p>②都賣市場 및 共販場이 保有하여야 할 施設의 基準은 部類別로 그 地域의 人口 및 去來物量 등을 고려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改正 '80.1.4, '86.12.31]</p>		<p>제31조(시설기준)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류별 도매시장 및 공판장이 보유하여야 할 시설의 기준은 별표1과 같다.</p> <p>②농림부장관(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도매시장의 개설허가를 위임받은 도지사를 포함한다)은 축산부류의 도매시장 및 공판장개설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또는 도계장시설을 갖추게 할 수 있다.[개정 '94.10.20]</p>

第57條의2(農水産物小賣業者協同組

合) ①農水産物小賣業者는 地方自治團體長의 許可를 받아 小賣市場單位 또는 行政區域單位로 農水産物小賣業者協同組合과 그 聯合會를 設立할 수 있다.

②農水産物小賣業者協同組合은 法人으로 하며,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③農水産物小賣業者協同組合의 定款 기재사항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農水産物小賣業者協同組合은 生産者團體와 契約에 의하여 農水産物을 직접 去來할 수 있다.[本條新設 '93.6.11, 改正 '94.11.1]

제40조(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

법 제5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소매업자협동조합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6. 출자1계좌의 금액과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및 그 납입방법과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
9.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의 정수와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57條의3(農水産物小賣流通의 改善)</p> <p>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生産者와 消費者의 보호 및 商去來秩序를 확립하기 위한 農水産物 消費段階의 합리적 流通改善에 대한 施策을 마련한다.</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施策을 달성하기 위하여 農水産物小賣業, 生産者와 消費者의 直去來事業, 生産者團體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가 運營하는 農水産物 直販場, 小賣施設의 現代化, 仲都賣業 등을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하여 지원 육성한다.[改正 '94.11.1]</p>	<p>10.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p> <p>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p> <p>제40조의2(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57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와 소비자단체를 말한다.[본조신설 '95.1.28]</p>	<p>제32조(농수산물 소매유통의 지원)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5.3.8]</p> <p>1. 농수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간의 직거래 사업</p> <p>2. 농수산물 소매시설의 시설현대화</p>

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2項의 農水産物小賣業者 등이 農水産物流通改善과 共同利益의 增進 등을 위하여 協同組合을 설립할 경우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이용편의 등을 지원할 수 있다.[本條新設 '93.6.11, 改正 '94.11.1]

第57條의4(農水産物물류센터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農水産物 물류센터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게 부지확보 또는 施設物設置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물류센터가 效率的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農水産物물류센터를 운영하자는 者 또는 이를 이용하는 者에게 그 운영방법

사업

3. 농수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농수산물 중도매업의 시설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제32조의2(농수산물물류센터의 설치)

①법 제5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농수산물물류센터 설치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2. 농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인삼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법 제57조의5의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또는 이용방법의 준수 등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p> <p>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農水産物물류센타를 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방법 및 출하농어가에 대한 서비스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④農水産物물류센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4.11.1]</p>		<p>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p> <p>3.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배송업자 등 민간유통업자</p> <p>4. 기타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시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신설 '97.12.20]</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확보방안
 2. 부지 및 시설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방안
 3. 세부적인 운영방법 및 물량처리 계획
 4. 기타 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
- ④농림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부지확보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자금의 일부 보조 또는 용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 [본조신설 '95.3.8]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57條의5(流通子會社의 設立) ①農 林畜水協 등은 農水產物 流通의 효 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 農水產物물류센타의 운영 및 기 타 流通事業을 수행하는 별도의 法 人(이하 “流通子會社”라 한다)을 設立·운영할 수 있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子會社 는 商法상 會社이어야 한다.</p> <p>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流通 子會社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 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本條新設 '94.11.1]</p>		<p>제32조의3(농수산물물류센타의 운영) 농수산물물류센타에서는 경매 또는 입찰외의 방법으로 농수산물을 매 매하여야 한다.[신설 '97.12.20]</p> <p>제32조의4(유통자회사의 사업범위) 법 제57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 자회사가 수행하는 기타 유통사 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수산물 수퍼 및 농수산물 직판 장 등 소비지 유통사업 2. 농수산물의 상품화촉진을 위한 규격화 및 포장개선사업 3. 기타 농수산물의 운송·저장사업 등 농수산물 유통의 효율화를 위 한 사업[본조신설 '95.3.8]

第58條(規格化의 促進 등) ①農林部

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의 商品性 向上과 公正한 去來形成을 위하여 去來品目の 規格을 定할 수 있으며,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나 都賣市場法人에 대하여 規格化의 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事項을 命할 수 있다.[改正 '80.1.4, '86.12.31, '93.6.11, '94.11.1]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農水産物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한 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公正한 去來秩序를 害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農水産物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一定한 地域 또는 市場에서 의 去來를 금지 또는 制限할 수 있다. [改正 '86.12.31]

제41조(규격화의 촉진) ①농림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농수산물에 대한 거래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출하된 농수산물규격의 적정여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 농수산물을 점검하고자 할 때에는 점검대상 농수산물의 품명 및 대상지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內에서 去來되는 農水産物의 安全性 확보 및 品質保證을 위하여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都賣市場內에서 販賣되는 輸入 또는 國産農水産物에 原産地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新設 '93.6.11, 改正 '94.11.1〕</p> <p>第58條의2(出荷物品의 安全性 확보)</p> <p>①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 農水産物을 出荷하는 者는 消費者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物品을 出荷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去來되는 品目중 消費者의 건강을 해치</p>	<p>농수산물의 거래의 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농수산물의 품명 및 규격과 금지 또는 제한지역, 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品目에 대하여는 消費者보호를 위
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本
條新設 '94.11.1]

第59條(財政支援) ①政府는 農水産物
流通構造改善과 流通機構의 육성을
위하여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
設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融資하거나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
다.[改正 '80.1.4, '86.12.31, '94.11.1]

②削除['94.11.1]

第59條의2(實態調査 등)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都賣市場의
효율적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農林部令 또
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法人 등
으로 하여금 都賣市場에 대한 實態
調査를 하게 하거나 운영·管理의

제33조(실태조사 등) 법 제59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도매시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는 법
인은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한국농
촌경제연구원으로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指導를 하게 할 수 있다.[本條新設 '86.12.31]</p> <p>第59條의3(評價實施) ①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는 당해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관리·운영에 대한 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改正 '94.11.1]</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評價結果를 綜合하여 中央評價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③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評價結果에 따라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부진사항의 시정을 명하거나 開設者로 하여금 都賣市場法人 또는 都賣市場 共販場에 대한 施設使用面積의 조정·차등</p>		<p>제34조(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p> <p>①법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절차 및 방법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을 정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도매시장 및 공판장 개설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평가대상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의하여 자체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지원 등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4.11.1]

④第1項과 第2項의 評價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3.6.11]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임업협동조합중앙회·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해당 협동조합의 자체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중앙평가를 위한 유통실태 조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 및 유통실태조사 자료를 종합하여 중앙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95.3.8]

②삭제['95.3.8]

③기타 평가 실시 및 결과조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第 7 章 監 督</p> <p>第60條(보고)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都賣市場法人 및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하여 그 財産 및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②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賣買參加人 또는 蒐集商에 대하여 農水産物의 價格과 需給安定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業務執行狀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新設 '94.11.1]</p> <p>第61條(檢査)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都賣市場과</p>		<p>제35조(검사의 통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공판장 및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에서 대출 또는 융자받은 자의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및 재산상태를 검사하</p>

共販場 및 基金에서 貸出 또는 融資받은 者의 業務와 이에 관련된 帳簿 및 財産狀態를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80.1.4, '86.12.31, '93.6.11 '94.11.1]

②第37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에 이를 準用한다.

第62條(命令)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賣市場 및 共販場의 適正한 運營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開設者나 都賣市場法人에 대하여 業務規程의 變更·業務處理의 改善등 監督上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80.1.4, '86.12.31, '93.6.11, '94.11.1]

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고자 할 때에는 미리 檢査의 목적·범위 및 기간과 檢査공무원의 소속·직위 및 성명을 통지하여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은 基金에서 融資 또는 貸出 받은 者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改正 '86.12.31]</p> <p>第63條(業務停止 또는 許可取消 등)</p> <p>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에는 開設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施設의 閉鎖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改 正 '86.12.31, '93.6.11, '94. 11.1]</p> <p>②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開設者(이하 “都賣市場法人 등” 이라 한다)가 이 法 또는 이 法에</p>	<p>제42조(청문절차) ①법 제63조제4항의 規定에 의하여 청문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등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p>	

의하여 발하는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月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86.12.31, '93.6.11, '94.11.1〕

③都賣市場의 開設者는 仲都賣人(第23條 및 第39條의5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人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蒐集商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에는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하거나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蒐集商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新設 '86.12.31, '94.11.1〕

④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規定에 의한 통지에는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都賣市場法人 등·仲都賣人 또는 蒐集商에게 處分을 하고자 하는 사유 및 聽聞의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고 聽聞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출석에 갈음하여 辯明書를 제출할 수 있다.[新設 '86.12.31, 改正 '93.6.11, '94.11.1]</p> <p>第63條의2(課徵金 處分)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法人 등이 第63條第2項에, 仲都賣人이 第63條第3項에 해당하여 業務停止를 하고자 할 경우, 그 業務의 정지가 당해 業務의 利用者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業務의 정지에 갈음하여 都賣市場法人에게는</p>		

1億 원 이하, 仲都賣人에게는 1,000萬 원 이하의 課徵金을 부과할 수 있다.

[改正 '94.1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은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가 國稅 또는 地方稅 徵收의 예에 따라 徵收한다.[本條新設 '93.6.11, 改正 '94.11.1]

第64條(權限의 委任 등) ①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農林畜水協中央會 또는 公益法人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80.1.4, '86.12.31, '94.11.1]

②都賣市場의 開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4條의 規定에

제43조(권한의 위임 등) ①삭제['96.8.8]

②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중앙도매시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호 및 제7호는 지방도매시장에 관한 권한을 포함한다.

1. 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의한 賣買參加人의 登錄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競賣士의 任免承認 등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管理公社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新設 '86.12.31, 改正 '94.11.1〕</p>	<p>에 의한 중앙도매시장의 개설 및 폐쇄허가</p> <p>2. 법 제13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 인접구역의 시장개설구역으로의 편입(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개설구역 편입을 제외한다)</p> <p>3.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 개설허가신청서의 접수 및 업무규정의 변경승인</p> <p>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의 조건부 개설허가</p> <p>5. 삭제['95.1.28]</p> <p>6. 삭제['95.1.28]</p> <p>7.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매시장과 공판장의 통합·이전·폐쇄 및 개설명령</p> <p>③개설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p>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 공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휴업승인
2. 법 제24조(법 제3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의 등록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 임명승인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의 타업무종사 허가
5. 법 제27조의2(법 제39조의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第 8 章 罰 則</p> <p>第65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 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80.1.4, '93.6.11, '94.1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第3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水 產物都賣市場” 또는 이와 類似한 市場名稱을 사용한 者 2. 都賣市場區域이나 共販場이 開設 된 特別市·廣域市 또는 市의 區域 안에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p>집상의 등록과 도매시장에의 출입 의 금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p> <p>6.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매매참가인 또는 수집상 의 업무집행상황 보고명령</p>	

를 받지 아니하고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農水産物の 都賣去來를 目的으로 都賣市場을 營爲하는 者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都賣市場法人의 業務를 행한 者〔新設 '94.11.1〕

4.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외의 場所에서 農水産物の 都賣業務를 하거나 農水産物の 販賣業務와 그 附帶業務외의 業務를 兼營業한 者〔新設 '94.11.1〕

5. 第23條第1項(第39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仲都賣人의 業務를 행한 者〔新設 '94.11.1〕

6. 第27條의2第1項(第39條의5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蒐集商의 業務를 행한 者[新設 '94.11.1]</p> <p>7. 第36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農水産物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買收한 者</p> <p>8.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共販場을 開設한 者 [新設 '94.11.1]</p> <p>9. 第63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處分을 받고도 그 業을 계속한 者</p> <p>第65條의2(罰則) 第1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推薦申請을 할 때 정한 用途외의 用途로 輸入農産物을 사용한 者에 대하여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本條新設 '94.12.31]</p>		

第66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 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3. 6.11, '94.11.1]

1.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法人의 業務와 競合되는 販賣業 또는 仲都賣業을 영위한 者
2. 第22條의 規定에 違反하여 廢業 또는 休業을 한 者
3. 第23條第4項(第39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賣 買參加人의 去來參加를 방해하거 나 正當한 사유없이 集團의으로 競賣 또는 入札에 不參한 者
4.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競賣士를 任免한 者
5. 第27條의2第2項(第39條의5第4項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蒐集商의 業務를 행한 者[新設 '94.11.1, 施行日 '95.7.1]</p> <p>6. 第27條의2第4項(第39조의5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出荷業務외의 販賣·買收 또는 仲介業務를 행한 者[新設 '94.11.1, 施行日 '95.7.1]</p> <p>7. 第28條第2項(第39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上場된 農水産物외의 農水産物을 去來한 者[新設 '94.11.1, 施行日 '95.7.1]</p> <p>8. 第35條(第39條의5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p>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 등 費用을 徵收한 者

9. 第37條第2項 또는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束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0. 第57條의4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11. 第6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第67條(罰則)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4.11.1]

1. 第27條의2第5項(第39條의5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出入制限 등의 措置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者[新設 '94.11.1, 施行日 '95.7.1]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2.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都賣市場에서의 정상적인 去來와 施設物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衛生·環境의 유지를 저해한 者〔新設 '94.11.1〕</p> <p>3. 第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다만, 共販場의 開設者에 대한 報告의 경우를 제외한다.〔新設 '94.11.1〕</p> <p>4.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p> <p>第6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65條, 第65條의2, 第66條 및 第6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p>		

그 行爲者를 處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94.11.1, 94.12.31]

附 則 ['76.12.31]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 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 2 條(廢止法律) 法律 第2483號 農水產物都賣市場法과 法律 第1815號 農水產物價格安定基金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 3 條(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農水產物都賣市場法에 의하여 開設된 都賣市場은 이 法에 의하여 開設된 都賣市場으로 보며 農水協이 그 業務를 代行하고 있는 都賣市場은 이 法에 의하여 開設된 農水協

부 칙 ['77. 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중 제18조제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한 중매업의 허가를 받

부 칙 ['77. 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도매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은 1981년 12월 31일까지 별표2 내지 별표4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共販場으로 본다.</p> <p>②이 法 施行당시 農水協이 開設한 農水産物販賣場은 農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에 의하여 開設된 農水協共販場으로 본다.</p> <p>③이 法 施行당시의 農水産物都賣市場法에 의하여 都賣市場業務를 代行하고 있는 者는 이 法에 의한 指定都賣人으로 본다.</p> <p>④이 法 施行당시의 農水産物都賣市場協會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水産物都賣市場指定都賣人協會로 본다.</p> <p>⑤이 法 施行당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法에 의하여 設置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農水産物價格安定基金으로 본다.</p>	<p>은 자로 보되, 이미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이나 담보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p> <p>③(경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제19조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p>	

附 則 ['78.12.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79.5.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농어촌개발공사가 농수산물 가격안정계획에 따라 실시한 수매·수입 및 판매사업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개발공사가 실시하는 비축사업이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에 그 수매·수입 및 판매사업에 따른 비용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율에 따라 정산한다.

附 則 ['80.1.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農水協이 開設·運營하고 있는 農水協共販場은 이 法에 의한 農水産物共販場으로 본다.

부 칙 ['82.12.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양곡·화훼 또는 약용작물의 판매업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부 칙 ['83.4.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별표1] 내지 [별표4] 및 [별표]의 개정 규정(양곡부류, 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에 관한 규정을 제외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있는 자는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본다.</p> <p>③(공익법인의 공판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가 개설한 공판사업장은 이 영에 의한 공판장으로 본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84.12.31]</p> <p>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한다)은 이 규칙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공판장의 중매인·매매참가인 및 경매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공판장의 중매인·매매참가인 및 경매사는 제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등록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p> <p>③(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은 [별표]의 시행일에 [별표]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p>

②(중매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 중매업을 하고 있는 자 중 제18조제2항제3호의 개정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계속 중매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당해 주식을 처분하거나 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附 則 ['86.12.31]

이 法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 칙 ['87.6.23]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지정도매인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지정도매인의 임원 중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도매인의 자격요건에 미달되는 자가 있는 경우 당해 임원의 임기가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 ['87.12.4]</p> <p>제 1 條(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第 2 條 내지 第 4 條 省略</p>	<p>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p> <p>제 3 조(경매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 임명된 경매사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경매사의 자격을 가진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매사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88.5.16]</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공판장 경매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4조제4항</p>

附 則 ['90.4.7]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
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 2 條 내지 第 7 條 省略

부 칙 ['90.8.8]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

제 2 조 내지 제 6 조 생략

부 칙 ['91.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축산
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
양회가 임명한 경매사는 이 규칙에 의
한 경매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매사는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농
산물유통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 ['91.12.31]</p> <p>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p> <p>第 2 條 내지 第 3 條 省略</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 ['93.6.11]</p> <p>이 法은 1994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94.5.4]</p> <p>제 1 조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94.5.14]</p> <p>제 1 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附 則 ['94.11.1]</p> <p>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7條의2, 第28條第2項·第3項, 第30條第1項</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95.1.28]</p> <p>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3항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중 수집상에 관한 사항은 1995년</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94.10.20]</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 ['95.1.28]</p> <p>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但書, 第39條의3第4項, 第39條의5第4項, 第66條第5號 내지 第7號 및 第67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1995年 7月 1日부터, 第35條第1項第5號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6年 1月 1日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都賣市場法人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指定都賣法人은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都賣市場法人으로 본다. 다만, 開設者에 의하여 指定有效期間이 設定된 경우에는 그 기간은 第17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것으로 보며, 指定有效期間이 設定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指定有效期間을 設定할 수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6.29]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6.8.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8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수집상 등록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5조제10호의 중도매인의 비상장 농수산물 거래허가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제4조제5호 및 제5조제13호의 쓰레기 유발부담금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5조제4항의 규정중 중도매인 점포에 대한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第3條(仲都賣人の許可 또는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의 仲賣人은 第23條第1項·第39條의 3第2項 또는 第39條의5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지정을 받은 仲都賣人으로 본다. 다만,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都賣市場 또는 都賣市場 共販場의 仲都賣人에 대하여는 第23條第5項 또는 第39條의 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有效 期間을 설정할 수 있다.</p> <p>第4條(賣買參加人の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共販場의 賣買 參加人은 第39條의3第3項 또는 第 39條의5第3項의 改定規定에 의하여</p>		<p>부 칙 ('95.6.30)</p> <p>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의 쓰레기 유 발부담금 징수품목에 관한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97.12.20)</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조·제3조의2제1항·제18조의3 및 제25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②(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및 별표2의 시설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가 또는 승인되거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부터 적용한다.</p>

登錄된 賣買參加人으로 본다.

第5條(競賣士의 任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任免된 共販場의 競賣士는 第39條의3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任免된 競賣士로 본다.

第6條(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水產物都賣市場指定都賣人協會는 第38조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水產物都賣市場法人協會로 본다.

第7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農水產物流通 및 價格安定에 관한 法律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法 律	施 行 令	施 行 規 則
<p>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p> <p>附 則 ['94.12.31]</p> <p>이 法은 世界貿易機構(WTO) 設立을 위한 마라케쉬協定の 효력이 國內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p> <p>附 則 ['96.12.12]</p> <p>이 法은 1997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p> <p>附 則 ['97.12.13]</p> <p>이 法은 1998年 1月 1일부터 施行한다.</p>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 시설기준
농수산물 물류센터 시설기준

여 백

[별표 1]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시설기준(제31조제1항관련)

부류별 도시인 구별 시설	양곡	청과			수산			축산			화훼	약용 작물	
	—	30만 미만	30만이상 ~ 100만미만	10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이상 ~ 100만미만	100만 이상	30만 미만	30만이상 ~ 100만미만	100만 이상	—	—	
대지	m ² 1,650	m ² 3,300	m ² 8,250	m ² 16,500	m ² 1,650	m ² 3,300	m ² 6,600	m ² 1,320	m ² 2,640	m ² 5,280	m ² 1,650	m ² 1,650	
건물	660	1,320	3,300	6,600	660	1,320	2,640	530	1,060	2,110	660	660	
필수 시설	경매장(유개)	500	990	2,480	4,950	500	990	1,980	170	330	660	500	500
	주차장	500	330	830	1,650	170	330	660	170	330	660	330	330
	냉장실					17	30	50	70	130	200		
						(20톤)	(40)	(60)	(80)	(160)	(240)		
	저빙실					17	30	50					
						(20톤)	(40)	(60)					
	오물처리장	30	30	70	100	30	70	100	70	130	200	30	30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	30	30	70	100	30	70	100	30	70	100	30	30
사무실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	
하주대기실· 출하상담실	30	30	50	70	30	50	70	30	70	100	30	30	

부류	양 곡	청 과	수 산	축 산	화 훼	약 용
부수 시설	상온창고,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저온창고,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재발효 및 추열실,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소각시설, 농산물 품질관리실	상온창고, 가공처리장, 제빙시설, 염장조, 염장실,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소각시설, 용융기	식육운반차량, 중도매인사무실, 도체등급검사시설, 부산물처리시설, 농산물품질관리실	저온창고, 상온창고,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상온창고, 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
기타 시설	기타 유통에 필요한 시설	기타 유통에 필요한 시설	기타 유통에 필요한 시설	기타 유통에 필요한 시설	기타 유통에 필요한 시설	기타 유통에 필요한 시설
<p>비 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는 처리능력임. 수산부류중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건해조류 및 젓갈류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냉장실, 제빙실을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설기준을 기준시설의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음. 부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음. 청과부류를 취급하는 공판장에 대하여는 청과부류 시설기준의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으며, 공판장이 청과부류와 기타부류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청과부류의 시설기준만을 적용함. 축산부류중에서 조류 및 난류만을 취급하는 도매시장, 공판장에 대하여는 축산부류 시설기준의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음. 충분한 주차장 및 차량진입도로와 상하수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함. 인구는 개설허가 또는 승인신청당시 인구를 기준으로 함. 다만, 특별시 및 광역시의 공판장의 경우에는 공판장이 설치되는 자치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함. 산지 공판장의 경우 위의 시설기준에서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수산물 공판장은 위의 시설기준에서 2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음. 						

[별표 2]

농수산물 물류센타의 시설기준(제32조의2제2항관련)

구분	기준
부지	20,000㎡ 이상
건물	10,000㎡ 이상
시설	1. 필수시설 가. 농수산물의 처리를 위한 집·배송시설 나. 포장·가공시설 다. 저온저장고 라. 사무실·전산실 마. 농산물 품질관리실 바. 거래처 주재원실 및 출하주 대기실 사. 오·폐수시설 아. 주차시설 2. 편의시설 가. 직판장 나. 수출지원실 다. 휴게실 라. 식당 마. 금융기관의 점포 사. 기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비 고

1. 편의시설은 지역여건에 따라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부지 및 건물면적은 취급물량과 소비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면적에서 50퍼센트까지 낮추어 적용할 수 있음.